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 무 주 초 등 학 교

우)55519 전북 무주군 무주읍 향한로 43 ◆ 교장실: 322-2504 ◆행정실: 324-5740 ◆ 교무실: 322-2505 ◆ F A X : 324-2505

http://www.muju.es.kr

목 차

1. 학교 현황	1
2.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2
3.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9
4. 교육공동체 연수(학부모 교육)	12
가. 청렴교육	12
나. 교권보호 교육 ·····	13
다. 학교폭력예방교육 ·····	14
라. 아동학대 및 가정 폭력예방교육	16
마.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22
바. 흡연예방교육	25
사. 감염병 예방	27
아. 정보통신 윤리교육	28
5. 학부모회 운영	30
별첨 1. 무주초등학교 학부모회칙	32
별첨 2. 무주초등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규정 ······	36

1. 학교 현황

가. 연혁 개요

년 월 일	개 요
1909. 09. 03.	사립 명륜학교로 개교
1912. 06. 27.	무주공립보통학교 인가 (2학급 31명)
1967. 03. 01.	무주중앙국민학교 분리 (12학급)
2009. 09. 03.	개교 100주년 기념일
2018. 09. 01.	제30대 김성헌 교장 부임
2021. 12. 30.	제110회 39명 졸업 (총12,598명)
2022. 03. 01.	특수학급 포함 12학급 편성(188명)

나. 교직원 현황

구분				교			원				일		반		직			교	육	공	무	직			
\' -			ز	교				人	ŀ								특	人	운	방	z	萡	버		총
	교	교	닫	교과	특	보	අ	상	휴직	계	행정실장	주무 관	시설관리	운 전 원	계	교무실무사	빠수교육지료	스포츠강사	운동부지도자	방과우저나더라	조리종사원	청소총사원	· 스아저기도사	계	
성별	장	감	담임	과 전 담	특수	보 건	පංද්ර	상 담	파 견		뢍	관	힏	원		묶	실사	강 사	도자	诗력	사 원	사 원	짇 사		계
남	1	1	7	2				1	1	13		2	1	2	5			•	1			•		1	19
여			4		1	1	1		1	8	1				1	1	1	1		3	3	1	2	12	21
계	1	1	11	2	1	1	1	1	2	21	1	2	1	2	6	1	1	1	1	3	3	1	2	13	40

다. 학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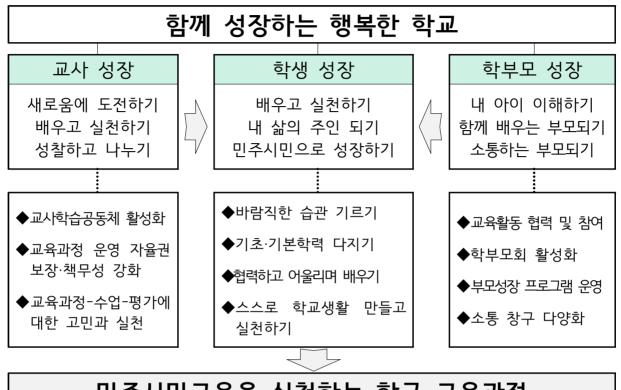
구분	학년	1	2	3	4	5	6	장미반	계
학 급	급 수	2	1	2	2	2	2	1	12
	남	18	15(1)	13	20	22(2)	14	(3)	102(3)
학생수	প	13	9	13	13(1)	24(2)	14	(3)	86(3)
	계	31	24(1)	26	33(1)	26(4)	28	(6)	188(6)

라. 시설 현황

교 지	운동장	실습지	체육관	보통교실	특별교실	관리실
43,251㎡	13,131㎡	43,251㎡	1185㎡	12	8	3
숙직실	창 고	도서관	관 사	화장실	체육관	식생활관
1	2	1	16	3	1	1

2. 2022학년도 학교교육과정

가. 학교 철학



민주시민교육을 실천하는 학급 교육과정

학생의 성장을 위해 교사와 학부모도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학생들은 협력을 통해, 교사들은 집단지성을 통해, 학부모들은 참여를 통해 함께 성장합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함으로써 모두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학생은 목표를 갖고, 배우고 익히는 노력을 통해, 알게 된 것이 내면화 되어 만족감을 느끼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또한, 앎과 삶이 연결되어 자발적으로 실천하는 바람 직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학교는 학생의 성장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 교육의 주체로 존중받으며 함께 성장하고 행복한 삶의 주인이 되길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 함께 논의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배움을 찾는 교육활동을 지향하고, 타인과 협력하고 어울리는 교육환경을 마련하며, 그 속에서 올바른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겠습니다. 스스로 배움을 찾고 타인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실패 경험도 소중히 여기며 실패로 인해 좌절하지 않도록 격려하는 교육공동체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대해 성찰하는 자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 가능한 교육방향을 함께 고민하며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으로 변화를 시도하는 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나. 학교교육 실천 과제

1) 학생 성장

가) 바람직한 습관 기르기

- (1) 배움과 성장을 위한 바람직한 습관을 기르는 노력
- (2) 학교생활규정, 학생생활협약식(4월), 교사의 통일된 생활지도를 통해 지속적 노력
- (3) 학생 스스로 바람직한 습관을 만드는 바른 학생문화

나) 기초・기본학력 다지기

- (1) 기초와 기본을 튼튼히 하고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신장으로의 노력
- (2) 맞춤형 기초 기본학력 신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학습능력 신장
- (3)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미래를 든든하게 준비하기

다) 협력하고 어울리며 배우기

- (1) 배우고, 체험을 통해 익히고, 학교 밖 마을과 사회에서 실천하는 기회 제공
- (2) 경쟁보다는 협력으로 배우고 익힌 것을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힘 마련

라) 스스로 학교생활 만들고 실천하기

- (1) 학교와 학급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고, 주인의식을 통해 성장하기
- (2) 학생자치
 - (가) 학급회와 학생회의 연계로 학생 중심의 학교 문화 형성
 - (나) 학급회: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5교시) 학급별 운영(학급회의 9시간)
 - (다) 학생회: 매월 둘째 주 수요일 6교시
 - (라) 협력적 관계 속에 학생회 선거 운영(3월)
 - (마) 리더십 캠프를 통해 책임감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바) 학교에 필요한 역할 제고 및 부서 편성을 통한 자치회 활성화
 - (사) 학생회 임원 선거 계획

순	과정	세부 내용	시기
1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 4, 5, 6학년 중에서 학급당 2명씩 선출 (한 학년의 학급이 1개일 경우 4명)	3. 2. ~ 3. 3.
2	학생 의견 수렴	• 선관위 주관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후보자들의 공약 수립을 위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	3. 7. ~ 3. 8.
3	후보자 등록	 회장(1명), 부회장(1명), 선거운동원(4명)이 팀을 이뤄 후보 등록 	3. 8. ~ 3.10.
4	후보자 교육	• 학교장 면담을 통한 공약 실천가능여부 확인	3.10. ~ 3.11.
5	홍보물 게시 및 선거운동	• 아침활동시간 및 점심시간 선거운동 • 학급순회 선거운동(쉬는시간)	
6	유권자 교육	• 선거관리위원회 및 업무 담당교사	3.14. ~ 3.23.
7	후보자 토론회	• 후보자 토론회 실시(온라인 생중계)	
8	투표	• 3~6학년 투표 참가	3.24. 08:30 ~
9	개표방송	• 온라인 생중계 활용(캠, 마이크, 현수막)	3.24. 16:00 ~
10	당선자 공고	• 학생회 게시판	3.25. 08:30 ~
11	당선증 수여 및 소감 발표	• 당선증 수여 및 당선자 소감발표	3.25. 08:40

- (3) 학생생활협약 제정
 - (가) 공동체 삶 속에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하고, 스스로 만든 생활협약을 지속 노력
 - (나) 문제적 행동에 대해 학생생활협약을 제정, 실천, 반성을 통해 습관 내재화
 - (다) 4월 중 학생생활협약식 운영
- (4) 학교 행사 기획
 - (가) 내 삶의 주체로서 하고 싶은 것은 스스로 결정
 - (나)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 함양
 - (다) 능동적인 학생 문화 형성
 - (라) 학생캠프 및 월별 학생회 행사 실시

마) 학생동아리

- (1) 동아리 개설, 운영, 발표, 평가까지의 모든 과정을 학생 주도적으로 운영
- (2) 교사는 동아리 활동 중 안전 지도를 실시하고, 동아리장의 요청사항에 대해 지원
- (3) 각 동아리는 목표지향적으로 운영하며 연 1회 동아리 활동 발표
- (4) 동아리 조정기를 두어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
- (5) 학생동아리는 3~6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3~4학년군, 5~6학년군으로 나누어 운영, 1~2학년은 각 학급별로 실시
- (6) 개별 교사의 희망에 따라 '교사 개설 동아리'를 둘 수 있음
- (7) 운영 계획
 - (가) 시수: 22차시
 - (나) 시간: 월요일 5~6학년군, 화요일 3~4학년군으로 나누어 운영
 - (다) 학생동아리 개설 현황

동아리명 (분류)	무주 드론 FLY (드론)	그림쟁이들의 DIY (미술)	행복댄스 (댄스)	조물 뚝딱! 만들기 (공예)
장소	소운동장	컴퓨터실, 창의융합실	역사관, 과학실	4학년 국화반
지원 교사	박상규	이지혜	최경미	한일희
동아리명 (분류)	웰컴 <u>투 방송부</u> (방	<u>착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 차</u>	메시와 <u>소작고</u> 성 중	키 작아도 괜찮아 (넷볼)
장소	학생회실	5학년 국화반	운동장	강당
지원 교사	박상기	백진순	백성민	박성민
동아리명 (분류)	일곱빛깔 무지개 (3학년 동아리)			
장소	3학년 교실			
지원 교사	이우철, 안정주			

2) 교사 성장

가) 교사학습공동체(매월 1 ~ 3주 수요일)

- (1) 교사의 성장을 통해 학생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교사학습공동체 형성
- (2)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하여 나누는 학교문화 형성
- (3) 배우고 성장한 내용을 교사성장발표회로 발표하여, 서로 나누고 성장하는 기회 마련
- (4) 교사학습공동체 활동

모임 형태 (월별 시기)	주요 활동 내용
학년군 (1~2주)	민주시민교육을 중심으로 학급운영 및 수업방향에 대한 적용 및 공유 (학년군별 별도 계획 작성)
전체 (3주)	교사교육과정, 인권 등 주요 교육 주제에 대한 독서 토론 및 연수 (3월 중 연간 계획 작성)

나) 교직원 동아리(매월 4주 수요일 - 4월 중 구성)

- (1) 교직원의 관심도에 따른 자율적 소모임을 구성하여 운영
- (2) 교직원의 학습, 취미, 협력과 나눔에 대한 의미 형성

다)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보장 및 책무성 강화

- (1) 학년별, 학급별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권 보장
- (2) 창의적인 다양한 빛깔의 학급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 형성
- (3) 학년별 중점 연구 등교 개학 후 사회적 여건에 따라 추가 계획

라) 교육과정-수업-평가에 대한 고민과 실천

- (1) 교육과정 전문가로서 교육과정-수업-평가의 일체화에 대한 노력 전개
- (2) 학생의 배움과 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적인 고민과 실천 전개
- (3) 의미 있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가르침과 배움이 동시에 이뤄지는 교실수업
- (4) 2학기 1회 학급별 학부모 공개수업 실시(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마) '민주시민교육' 실시

- (1) 학생의 민주성을 살리는 학교 행사, 학생회, 학생 동아리 등 민주적 학교 문화 조성
- (2) 2021학년도 실시한 학년별 민주시민교육을 토대로 교과 학습과 학급 운영 전반

에 걸친 '민주시민교육' 실시

- (가) '인권' 학교교과목 개설 추진
 - 자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는 역량 함양 및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태도 신장
 - 학년별 20차시 주제 중심 수업 구성
 - 학년간 계열성, 내용적 타당성 등 체계 확립
 - 학교 주체(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의 참여와 협력을 위한 설문조사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실시
- (나) 학년별 자율 주제에 대한 주제중심교과통합 수업 운영
 - 교육과정 전문가로서의 역량 함양을 위해 교육과정 분석 및 편성을 통한 구 체적 계획 수립
 - 교사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해 집단 지성 발휘
 - 학기막 교사성장박표회를 통해 수업 운영 결과 공유

3) 학부모 성장

가) 책노리 동아리

- 함께 책 읽고 토론하기, 도서실 도우미활동, 저학년 책읽어주기 활동 전개

나) 해노리 동아리

- 주말 또는 방과 후에 전래놀이, 공동체놀이, 숲 놀이 등을 아이들과 함께 활동 전개

다) 손노리 동아리

- 재봉틀 구입하여 모여 연수하고 다양한 소통의 장 마련

라) 꽃노리 동아리

- 식물을 기르며 마음을 정화하는 미적 감수성 함양

마) 맛노리 동아리

- 학부모 재능나눔를 통한 건강한 집반찬 만들기 활동 전개

다. 2022학년도 연간 학사일정

■ 2022학년도 총 수업일수 190일, 여름방학 27일, 겨울방학 60일

<1학기>

구분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일	요 일	행 사	요일	행 사	요 일	행 人	ŀ	요 일	행시	ŀ	요 일	행 시		요 일	행	사
1	화	삼일절	금	리더쉽캠프	일			수	지방선기	1일	금			월		
2	수	입학.시업식 <u>돌봄</u> 시작	토		월			목		삻	토			화		
3	목		일		화			금		상 연 (4년)	일			수		
4	금		월		수	어린이날 형	행사	토			월			목		
5	토		화		목	어린이	날	일			화			금	방과후	. 종료
6	일		수	생활협약식	금	재량휴업	일	월	현충일	빌	수			토		
7	월		목		토			화			목			일		
8	화		금		일	부처님오	신날	수			금			월		
9	수	대통령선거일	토		월			목			토			화		
10	목	방과후 개강	일		화			금			일			수		
11	금		월		수		쓚뚔	토			월			목		
12	토		화		목		(3 4)	일			화			금		
13	일		수		금			월			수			토		
14	월		목		토			화			목			일		
15	화		금		일			수			금	방과후 콩	등료	월	광복	부절
16	수		토		월			목			토			화		
17	목		일		화		ᄉ사	금			뎰			수	2학기 여름기	시작 I학식
18	금		월		수		상 장 당	토			월		7	목		
19	토		화		목		(3 [-)	일			화		조 정 기	금		
20	일		수		금			월			수		1	토		
21	월		목	무구군 육상대회	토			화			목	여름방학/	시작	일		
22	화		금		일			수			금			월	2학기	방과후
23	수	교육과정설명회	토		월			목			토			화		
24	목	학생회선거	일		화		ᄊ	금			일			수		
25	금		월		수		상 (작)	토			월	방과후 가	강	목		
26	토		화		목		(++ +)	일			화			금		
27	일		수		금			월			수			토		
28	월		목		토			화			목			일		
29	화		금		일			수			금			월		
30	수		토		월 화		상 (년)	목			토			화		
31	목						(4년)			_	일			수		
휴일일수		10	9			11			10		17			20(16/4)		
출석일수		21		21		20			20			14			11	
긚일수		21		21		20			20			14			11	

<2학기>

구분		9월		10월		11월		12월			1월	<u> </u>		2월
일	요일	행사	요일	행사	요일	행사	요일	행사		요일	ą	행사	요일	행사
1	목		토		화		목			일			수	
2	금		일		수		금			월			목	
3	토	개교기념일	월	개천절	목		토			화			금	
4	일		화		금		일			수			토	
5	월		수		토		월			목			일	
6	화		목		일		화			금			월	
7	수	세계문화축제	금		월		수			토			화	
8	목		토		화		목			일			수	
9	금	추석연휴	뎰	한글날	수		금			월			목	
10	토	추석	월	대체공휴일	목		토			화			금	
11	일	추석연휴	화		금		일			수			토	
12	월	대체공휴일	수		토		월			목			일	
13	화		목		일		화			금			월	
14	수		금		월		수			토			화	
15	목		토		화		목			일			수	
16	금		일		수		금			월			목	
17	토		월		목		토			화			금	
18	일		화		금		일			수			토	
19	월	테마체험학습	수	학생축제	토		월			목			일	
20	화	테마체험학습	목		일		화			금			월	
21	수		금		월		수			토	설님	날연휴	화	
22	목		토		화		목			일	٢	설날	수	
23	금	덕유산-5	일		수		금	2학기 방교	각후	월	설님	날연휴	목	
24	토		월		목		토			화	대체	공휴일	금	
25	일		화		금		일	성탄절		수			토	
26	월		수		토		월			목			일	
27	화	안전체험학습	목		일		화		ス	금			월	
28	수		금		월		수		조 정 기	토			화	
29	목		토		화		목		기	일				
30	· 금		일		<u>수</u>		금	종업.졸업식		월				
31			월				토			화				
휴일일수		10		12		8		9			31			28
출석일수		20		19		22		22			0			0
급식일수		20		19		22		22			0		0	
		학 기		(00)	1ē	기	/_	2학	기		00.1		계	
계		후일 일수 (2년				. ~ 8.16.) '3	(2022.8.17.~ 202 102			023.2.28.)			175	
711		출석 일수			9	6		94					1	90
		급식 일수			9	6		94	4				1	90

3. 2022학년도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운영

가. 방과후학교

1) 운영 기간 : 2022년 3월 10일(목) - 2023년 1월 20일(금), 총 42주 운영

구 분	운 영 기 간	비고
1학기	2022.3.10.(목) ~ 7.15.(금), 19주	-공휴일, 재량휴업일, 학교행사일 제외
여름방학	2022.7.25.(월) ~ 8.5.(금), 2주	-보강기간 별도 운영하지 않으나 재료비가
2학기	2022.8.22.(월) ~ 12.23.(금), 18주	수익자 부담인 경우 보강할 수 있음
겨울방학	2023.1.2.(월) ~ 1.20.(금), 3주	-예산 범위 내에서 기간 조정할 수 있음

2) 대상: 방과후학교 참여 희망자(1-6학년)

3) 프로그램 편성 : 정원 초과시 추첨, 1년 단위 운영(방학 포함)

1 F발공에 1-2 월.금(13:20-14:00) 20 창의 *제로비 수의자 부당 회당 4 2,000원 2-3 월.금(14:10-14:50) 20 융합실 2,000원 4 2,000Đ 2,000Đ 4 2,000Đ 2,0	순	프로그램명	학년	지도일시	정원	장소	비고	시수
1 토탈공에 2-3 월:금(14:10-14:50) 20 용합실 2,000원 4 2 3 4 1 4 3 4 1 3 4 1 4 3 4 1 3 4 1 4 4 1 3 4 1 4 4 1 4 4 1 4 1	근				0 2	_		^ —
2 화(14:10-14:50)	1	토탈공예	· -		20	_		4
2 창의수학 1 화(15:00-15:40) 3-6 화(15:50-16:30) 3 경퓨터실 3-4 수,목(14:10-14:50) 5-6 수,목(15:50-16:30) 4 전재되실 2 수,목(15:50-16:30) 3-6 수,목(15:50-16:30) 3-6 수,목(15:50-16:30) 3-6 수,목(15:50-16:30) 3-6 수,목(15:50-16:30) 3-6 화,목(15:50-16:30) 3-6 화,목(15:50-16:30) 3-6 수(15:50-16:30) 3-6 3-6 월(15:00-16:30) 3-6 월(15:00-16:30) 3-6 주(15:00-15:40) 3-6 4수(15:50-16:30) 3-6 주(15:00-15:40) 3-6 4수(15:00-15:40) 3-6 4수(15:00-15:40) 3-6 3-6 3-6 (15:00-15:40) 3-6 3-6 3-6 (15:00-15:40) 3-6 3-6 3-6 (15:00-15:40) 3-6 3-6 3-6 (15:00-15:40) 3-6 3-6 3-6 (15:00-15:40) 3-6 3-6 3-6 (15:00-15:40) 3-6 3-6 3-6 (15:00-16:30) 3-6 3-6 3-6 3-6 (15:00-16:30) 3-6 3-6 3-6 3-6 (15:00-16:30) 3-6 3-6 3-6 3-6 3-6 3-6 3-6 3-6 3-6 3-6						중입결	2,000년	
3-6 화(15:50-16:30) 3-4 수,목(14:10-14:50) 5-6 수,목(15:50-16:30) 4 4 한자교실 2 수,목(15:00-15:40) 3-6 수,목(15:50-16:30) 5 독서교실 1-2 화(15:50-16:30) 4 (15:50-16:30) 3-6 후,목(15:50-16:30) 3-6 후,목(15:50-16:30) 3-6 후,목(15:50-16:30) 3-6 후,목(15:50-16:30) 3-6 후,목(15:50-16:30) 3-6 후,목(15:50-16:30) 3-6 후,(15:50-16:30) 3-6 후,(15:50-16:30) 3-6 후,(15:50-16:30) 3-6 후,(15:50-16:30) 3-6 후,(15:50-16:30) 3-6 후,(15:00-15:40) 3-6 월,화(15:00-15:40) 3-6 월,화(15:00-15:40) 3-6 후,(15:00-15:40) 3-6 후,(15:00-16:30) 3-6		=1014=1			4.4	창의		_
3-6 와(15·50-16·30) 3-4 수,목(14·10-14·50) 5-6 수,목(15·50-16·30) 4 한자교실 2 수,목(15·50-16·30) 5 독서교실 1-2 화(15·50-16·30) 3-6 후,목(15·50-16·30) 3-6 화,목(15·50-16·30) 4 전래놀이 1 수(15·00-15·40) 3-6 주(15·50-16·30) 5 목가 3-6 화(15·50-16·30) 1-2 월화(15·50-16·30) 1-2 월과(15·50-16·30) 1-2 월과(15·50-16·30) 1-2 월과	2	상의수약		· · · · · · · · · · · · · · · · · · ·	16	융합실		3
3 점퓨터				· · · · · · · · · · · · · · · · · · ·		022		
1	3	컴퓨터			20	컴퓨터실		4
4 한자교실 2 수,목(15:00-15:40) 20 상학실 6 3-6 수,목(15:50-16:30) 화(15:50-16:30) 도서실 4 4 5 독서교실 1-2 화(15:50-16:30) 도서실 4 4 6 전래놀이 1 수(15:50-16:30) 20 강당 3 7 축구 3-6 월(15:00-15:40) 20 운동장 2시간 연강 2 8 바이올린 1-2 월,화(14:10-14:5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5:4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5:40) 16 창의용합실 2시간 연강 2 10 코딩-코급 3-6 수(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1 코딩-고급 3-6 목(15:00-15:40) 16 강당 소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4 12 화(15:50-16:30) 12 실교 소급, 소급 중 한가지 선택 4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4 한자교실 2 수,목(15:50-16:30) 20 융합실 6 5 독서교실 1-2 화(15:50-16:30) 16 도서실 4 6 전래놀이 1 수(15:50-16:30) 2 수(14:10-14:50) 20 강당 3 7 축구 3-6 월(15:00-15:40) 20 강당 3 8 바이올린 1-2 월(15:00-16:30) 20 운동장 2시간 연강 2 8 바이올린 1-2 월(15:00-16:3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5:40) 10 보이용합실 2시간 연강 2 10 코딩-초급 3-6 수(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1 코딩-고급 3-6 후(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2 배드민턴 2 화(15:50-16:30) 16 강당 사재료비 수의자 부담 회당 13 요리 1 금(14:10-15:50) 12 실과 실급실 *3-6학년 2시간 연강 13 요리 1-2 금(15:00-16:30) 16 창의 ************************************						창의		
5 독서교실 1-2 화(15:50-16:30) 16 도서실 4 6 전래놀이 2 수(14:10-14:50) 20 강당 3 7 축구 3-6 월(15:00-15:40) 20 강당 3 8 바이올린 1-2 월,화(14:10-14:5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5:4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5:40) 16 창의용합실 2시간 연강 2 10 코딩-초급 3-6 수(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1 코딩-고급 3-6 목(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6 강당 4 13 요리 1 금(15:00-16:30) 16 강당 4 13 요리 1 금(14:10-15:50) 12 실과 소/4학년 2시간 연강 13 요리 금(15:00-16:30) 16 장당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15 금(15:00-16:30) 16 장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16 금(15:00-16:30) 16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4	한자교실		., .,	20			6
5 독서교실 1-2 목(14:10-14:50) 16 도서실 4 6 전래놀이 2 수(14:10-14:50) 20 강당 3 7 축구 3-6 수(15:50-16:30) 20 운동장 2시간 연강 2 8 바이올린 1-2 월,화(14:10-14:5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5:40) 16 창의용합실 2시간 연강 2 10 코딩-초급 3-6 수(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1 코딩-고급 3-6 목(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6 강당 4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6 강당 本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3 요리 1 금(15:00-16:30) 12 실과 本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3 금(15:00-16:30) 16 장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3-6	., .,		085		
5 녹서교실 복(14:10-14:50) 16 도서실 4 3-6 화,목(15:50-16:30) 2 수(14:10-14:50) 3 6 전래놀이 1 수(15:00-15:40) 20 강당 3 7 축구 3-6 월(15:00-16:30) 20 운동장 2시간 연강 2 8 바이올린 1-2 월,화(14:10-14:5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5:40) 16 창의용합실 2시간 연강 2 10 코딩-초급 3-6 수(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1 코딩-고급 3-6 목(15:00-15:40) 16 강당 3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6 강당 4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6 강당 4 13 요리 1 금(13:20-14:00) 12 실과 실과 소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13 요리 금(15:00-16:30) 16 창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10 금(15:00-16:30) 16 장의 ★재료비 소의자 보다 회담			1-2					
6 전래놀이 2 수(14:10-14:50) 20 강당 7 축구 3-6 수(15:50-16:30) 20 운동장 2시간 연강 2 8 바이올린 1-2 월,화(14:10-14:5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5:40) 16 창의융합실 2시간 연강 2 10 코딩-초급 3-6 수(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1 코딩-고급 3-6 목(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6 강당 4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6 강당 4 13 요리 1 목(15:00-15:40) 16 강당 4 13 요리 1 금(13:20-14:00) 12 실과 실과 실급실실 ★3-6학년 2시간 연강 15 3-6 금(15:00-16:30) 16 창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5	독서교실	1 2	목(14:10-14:50)	16	도서실		4
6 전래놀이 1			3-6	화,목(15:50-16:30)				
3-6 수(15:50-16:30) 20 운동장 2시간 연강 2 2 3-6 월(15:00-16:3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5:4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6:30) 16 창의용합실 2시간 연강 2 10 코딩-초급 3-6 수(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 목(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 목(15:00-15:40) 16 강당 4 3-6 화,목(15:50-16:30) 17 월급실 ★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창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창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창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창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차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차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차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차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차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차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차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차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차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차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급(15:00-15:40) 20 차의 4 4 4 4 4 4 4 4 4			2	수(14:10-14:50)				
7 축구 3-6 월(15:00-16:30) 20 운동장 2시간 연강 2 8 바이올린 1-2 월,화(14:10-14:5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5:40) 16 창의융합실 2시간 연강 2 10 코딩-초급 3-6 수(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1 코딩-고급 3-6 목(15:00-15:40) 16 강당 4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6 강당 4 12 파드민턴 2 화(15:00-15:40) 16 강당 4 13 요리 1 금(13:20-14:00) 12 실과 실과 실과 13 요리 금(14:10-15:50) 12 실과 실급실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창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6	전래 놀 이	1	수(15:00-15:40)	20	강당		3
8 바이올린 1-2 월,화(14:10-14:5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5:40) 16 창의융합실 2시간 연강 2 10 코딩-초급 3-6 수(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1 코딩-고급 3-6 목(15:00-15:40) 16 강당 3-6 화,목(15:50-16:30) 16 강당 3-6 화,목(15:50-16:30) 12 실과 실급실 *3-6학년 2시간 연강 4 13 요리 1 금(14:10-15:50) 12 실과 실급실 *3-6학년 2시간 연강 4 1-2 금(15:00-15:40) 20 창의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3-6학년 2시간			3-6	수(15:50-16:30)				
8 바이올린 3-6 월,화(15:00-15:40) 12 역사관 악기 학교 제공 4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6:30) 16 창의융합실 2시간 연강 2 10 코딩-초급 3-6 수(15:00-15:40) 20 컴퓨터실 초급, 고급 중 한가지 선택 2 11 코딩-고급 3-6 목(15:00-15:40) 16 강당 3-6 화,목(15:50-16:30) 16 강당 4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6 강당 4 13 요리 급(14:10-15:50) 12 실과 실습실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창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창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창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창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창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창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담 1-2 급(15:00-15:40) 20 차의 취임 1-2 급(15:00-15:40) 20 차의 1-2 급(7	축구	3-6	월(15:00-16:30)	20	운동장	2시간 연강	2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5:40)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6:30) 16 창의용합실 2시간 연강 2 10 코딩-초급 3-6 수(15:00-15:40) 11 코딩-고급 3-6 목(15:00-15:40)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3 요리 1 목(15:00-15:40) 14 금(14:10-15:50) 12 실과 실급실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6:30) 20 창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ULOI 0 31	1-2	월,화(14:10-14:50)	10	CH I L7L	아크 동네 제고	4
10 코딩-초급 3-6 수(15:00-15:40) 11 코딩-고급 3-6 목(15:00-15:40)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3 요리 1 금(14:10-15:50) 14 금(15:00-16:30) 15 금(15:00-16:30) 16 장당 4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16 장당 4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8	마이출닌	3-6	월,화(15:00-15:40)	12	식사관	역기 역포 제공	4
11 코딩-고급 3-6 목(15:00-15:40)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3 요리 2 금(13:20-14:00) 14 금(14:10-15:50) 15 금(15:00-15:40) 16 강당 4 2과 실과 실습실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창의 ★재료비 소의자 보다 하당	9	캘리그라피	3-6	월(15:00-16:30)	16	창의융합실	2시간 연강	2
11 코닝-고급 3-6 목(15:00-15:40)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3-6 화,목(15:50-16:30) 13 요리 2 금(13:20-14:00) 12 실과 실과 실급실 ★제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창의 ★재료비 수익자 보다 회담	10	코딩-초급	3-6	수(15:00-15:40)	20	커뮤니시	크 그 그 ス 하기 나타	_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6 강당 4 3-6 화,목(15:50-16:30) 12 13 요리 2 금(13:20-14:00) 12 실과 실급실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찾의 ★재료비 수익자 보다 희당	11	코딩-고급	3-6	목(15:00-15:40)	20	김규니결	조급, 고급 중 인기시 신택	2
3-6 화,목(15:50-16:30) 2 금(13:20-14:00) 12			1	목(15:00-15:40)				
2 금(13:20-14:00) 12 실과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5,000원 4 3-6 금(15:00-16:30) 16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찾의 ★재료비 스익자 보다 하다	12	배드민턴	2	화(15:00-15:40)	16	강당		4
13 요리 1 금(14:10-15:50) 12 5,000원 4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찾의 ★재료비 스인자 보다 하다			3-6	화,목(15:50-16:30)				
13 요리 1 금(14:10-15:50) 12 5,000원 4 ★3-6학년 2시간 연강 1-2 금(15:00-15:40) 20 찾의 ★재로비 스인자 보다 하다			2	금(13:20-14:00)	12	Al al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1-2 금(15:00-15:40) 20 찾의 ★재료비 스이자 보다 하다	13	요리	1	금(14:10-15:50)	12		5,000원	4
1.4 <u>차이고등</u> 1-2 금(15:00-15:40) 20 창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2			3-6	금(15:00-16:30)	16	실습실	★3-6학년 2시간 연강	
	1.4	5L0171-1	1-2	금(15:00-15:40)	20	창의	★재료비 수익자 부담 회당	_
14 정의파악 3-6 금(15:50-16:30) 20 융합실 2,500원 2	14	창의과학	3-6	금(15:50-16:30)	20	융합실	2,500원	
합계 44		'	·	합계	·			44

4) 시간표

요일 시간	월	화	수	목	금
<5교시>13:20 ~14:00(40분)	*토탈공예(1~2)				*토탈공예(1~2) *요리(2)
<6교시>14:10 ~14:50(40분)	*바이올린(1~2) *토탈공예(2~3)	*창의수학(2) *바이올린(1~2)	*한자교실(1) *전래놀이(2) *컴퓨터(3~4)	*한자교실(1) *독서교실(1~2) *컴퓨터(3~4)	*요리(1) *토탈공예(2~3)
<7교시>15:00 ~15:40(40분)	*바이올린(3~6) *축구(3~6) *캘리그라피(3~6)	*창의수학(1) *배드민턴(2) *바이올린(3~6) *독서교실(3~6)	*한자교실(2) *전래놀이(1) *코딩(3~6)-초급	*한자교실(2) *배드민턴(1) *코딩(3~6)-고급 *독서교실(3~6)	*창의과학(1~2) *요리(3~6)
<8교시>15:50 ~16:30(40분)	*축구(3~6) *캘리그라피(3~6)	*독서교실(1~2) *창의수학(3~6) *배드민턴(3~6)	*전래놀이(3~6) *한자교실(3~6) *컴퓨터(5~6)	*한자교실(3~6) *배드민턴(3~6) *컴퓨터(5~6)	*창의과학(3~6) *요리(3~6)

나. 초등돌봄교실

1) 운영 기간 : 2022. 3. 2.(수) ~ 2023. 2. 17.(금)까지 운영 총 51주 운영, 235일

구 분	운영 기간	운영 시간	비고
1학기	2022. 3. 2.(화) ~ 7. 19.(화), 21주, 95일	12:50~16:50	*3월 2일~4일
여름방학	2022. 7. 25.(월) ~ 8. 12.(금), 3주, 15일	8:30~16:00	-임시운영
2학기	2022. 8. 17.(수) ~ 12. 29.(목), 20주, 92일	12:50~16:50	-간식 제공 없음 -외부프로그램 운
겨울방학	2023. 1. 2.(월) ~ 2. 17.(금), 7주, 33일	8:30~16:00	영하지 않음

- 2) 대상: 1-2학년 중 돌봄 희망자
- 3) 운영 관련 사항
- -학기 중에는 2개반(A,B반 1·2학년 혼합), 방학 중에는 1개반(1·2학년 혼합) 운영 예정 -학교 상황 및 예산, 참여 인원에 따라 운영 기간 및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음
- 4) 프로그램 및 시간표

순	프로그램명	지도일시	장소	준비물	담당	비고
					돌봄	★수익자 부담 경비 -간식비(1500원),
1	초등돌봄교실	월-금(12:50~16:50)	돌봄교실	없음	전담사	-방학 중식비(6,000-7,000원) -교육비 지원 대상 학생은 무료 ★간식 및 중식은 코로나 상황에 따 라 제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2	생활체육	월(14:10~15:40)	돌봄교실	없음	외부강사	★A, B반 나누어 운영됨
3	종이접기	화(14:10~15:40)	돌봄교실	없음	외부강사	★ <u>돌봄</u> 교실 참여 학생 중 방
4	놀이미술	수(14:10~15:40)	돌봄교실	없음	외부강사	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참여
5	동화구연	목(14:10~15:40)	돌봄교실	없음	외부강사	가 의무 참석
6	놀이교실	금(14:10~15:40)	돌봄교실	없음	외부강사	★재료 및 교구 학교 지원

요일	f	<u></u>	Ē	<u></u>	수		목		÷	금
시간	A반	B반	A반	B반	A반	B반	A반	B반	A반	B반
12:50~13:00(10분)	초등돌봄교실 준비									
13:00~13:20(20분)	항생 (출석	뫏일)							항생 맛이 (불석 체크)	
13:20~14:00(40분)	돌	봄							돌봄	
14:00~14:10(10분)	쉬는시간 및 수업이동(돌봄 전담사 관리)									
14:10~14:50(40분)	생활체	∥육(A)	종이접	[기(A)	놀이ㅁ	술(A)	동화구연(B)		놀이고	교실(B)
14:50~15:00(10분)			쉬는	시간 및	수업이	동(돌봄 건	전담사 괸	<u>:</u> 리)		
15:00~15:40(40분)	생활체	∥육(B)	종이접	[기(B)	놀이ㅁ	술(B)) 동화구연(A)		놀이고	교실(A)
15:40~15:50	쉬는시간 및 수업이동(돌봄 전담사 관리)									
15:50~16:30(40분)	돌봄									
16:30~16:50(20분)	정리와 인사, 안전하게 귀가 지도, 교실 정리 및 청소									

다. 자유수강권

1)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재료비, 돌봄 간식비, 돌봄 중식비 등 1인당 연간 60만원(최대 80만원)

2) 지원대상

-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법정 차상위 대상자,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국가 보훈 대상자(국가 유공자 등)자녀
-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학교장 추천.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 ○4순위(다자녀, 다문화 추천)
- ※다자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 ※3-4순위: 나이스에 최초 통보된 학생(5월 기준) 1-2순위의 10%이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학교장 및 다문화, 다자녀 추천은 반드시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하고 지원신청학생은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함
- 3) 자유수강권 지원 방식
 - ○학부모가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온라인)에 신청 →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신청		접 수		소득재산 조사		대상자 결정
학생·보호자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교육바원클릭신청 시스템, 복지로)	>	시 • 군 • 구 (행 복e음)	•	학교 (NEIS)

- 4) 자유수강권 운영기간: 3월~다음 해 2월(1년단위)
 - 신청한 월부터 지원 가능 : 자유수강권을 신청한 월 이전에 납부한 수익자 부담금은 환불 불가
 - 작년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는 올해 선정과 무관하게 1/4분기(3-5월)까지 지원
 - 작년 대상자가 올해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는 2/4분기부터 수익자 부담

5. 교육공동체 연수(학부모 교육)

2022학년도 청렴교육 연수 자료

가. 청렴의 정의

- 부패를 멀리하고 맡은바 직무를 성심 성의껏 하려는 자세
- 어떤 상황에도 일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법대로 공평하고 바르게 처리하는 것
- ※ 사전적 의미: 성품과 행실이 맑고 깨끗하며 재물 따위를 탐하는 마음이 없음

나. 불법 찬조금 및 촌지 근절 교육

1) 촌지 유형

- 가.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백 등
- 나.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2) 불법찬조금 유형

- 가.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나. 학생회 임원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다.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하여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꼭 기억해 주세요!

- ▶ 학년 초, 학기 초, 상담주간에 학교 방문 시, 스승의 날 전후,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학교 방문 시 교직원과 학생을 위하여 촌지, 선물, 음료수, 간식, 불법 찬조금품 등은 주지도 받지도 않습니다. 교내 행사 및 다양한 교육활동은 정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시간으로 필요한 모든 교수학습 자료, 기타 필요 물품 등은 학교운영비에서 제공됩니다.
- ▶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 시 담임이나 학생을 위한 어떠한 음식 제공도 사양합니다. 체험활동 시 교사에게는 중식비가 지급됩니다.
- ▶ 학부모 단체에서 학교, 학년, 학급을 위해 또는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 등 다양한 이유로 금액을 모금해서는 안 됩니다.

※ 청렴은 실천입니다! 國正天心順 官淸 民自安

2022학년도 교권보호교육 연수 자료

가. 추진 배경

- 1) 교육활동 침해 증가→ 교원의 교육권 및 학생의 학습권 동시 위협
- 2)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빈도수 증가→ 교권의 실추 및 교원 사기 저하

나. 추진 필요성

- 1) 교권과 학생인권이 공존하는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정착 필요
- 2) 교원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 체계 구축 필요
- 3) 치유 중심의 소극적 지원에서 예방 중심의 적극적인 보호 지원 방법 필요

다. 교원지위법(제15조)에서 규정하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교권침해)

소속 학교의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 가. 「형법」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 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라.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주요내용

영역	주요 내용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 강화	 침해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의 정도에 따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①학교에서의 봉사 ②사회봉사 ③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④출석정지 ⑤학급교체 ⑥전학 ⑦퇴학(고등학교 해당)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는 학생의 보호자도 반드시 참여하며, 참여하지 아니한 보호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활동 침해	•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보호자 등이 보호조치 비용(예-치료비 등)을
피해교원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한 치료를 위해 피해교원 및 학교의 장이 원하는
보호조치 비용	경우에는 관할청(교육청)이 부담하고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관할청에	•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관할청(교육청)은 교육활동
의한 고발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함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게 됩니다. <u>학생의 인권과 교원의 교권이 서로</u> <u>존중받는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u>

2022학년도 학교폭력예방교육 연수 자료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 학교폭력이란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학교폭력 유형 ♦



◆ 학교폭력 징후 ◆

◎ 피해학생 징후

- √ 지각이나 결석이 잦습니다.
- √ 성적이 갑자기 혹은 서서히 떨어집니다.
- √ 갑자기 최근에 안색이 안 좋고 평소보다 기운이 없습니다.

◎ 사이버폭력 피해 징호

- √ 불안한 기색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자주 확인하고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 √ 단체 채팅방에서 집단에게 혼자만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당합니다.
- √ 온라인에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나 메신저를 본 후에 당황하거나 정서적으로 괴로워 보입니다.

◎ 가해학생 징후

- √ 반항하거나 화를 잘 냅니다.
- √ 귀가 시간이 늦거나 불규칙합니다.
- √ 다른 학생을 종종 때리거나, 동물을 괴롭히는 모습을 보입니다.

- ◆ 학교폭력 발생 시 대응 요령 ◆ 자녀 대화 기술
 - √ "많이 힘들었구나.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줄까?"하고 공감하고 지지해 주세요.
 - √ 다그치면 더 숨깁니다. 야단치지 말고 차분하고 따뜻하게 얘기하세요.
 - √ 용기 내어 얘기한 자녀를 칭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같이 생각하세요.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학부모의 역할 ◆

- 1. 내 자녀도 폭력의 가해자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 2. 수시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자녀 개인의 행동발달 상황 및 교우관계를 파악합니다.
- 3. 자녀에게 생명의 존귀함, 상호 인권(인격) 존중, 역지사지, 책임 및 준법 의식 등을 인식 시킵니다.
- 4. 자녀에게 혹시 폭력 피해를 당하게 되면 자신감을 가지고 대화로 당당히 맞서되, 어려울 경우 자리를 피한 후 반드시 선생님이나 부모님 또는 친구 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 5. 상담이 필요한 학생에게는 학교 차원에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임선생님과 협의하여 공동 지도하도록 합니다.
- 6. 자녀에게 모범이 되는 행동, 웃는 얼굴, 온정적인 말, 사랑으로 대화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안내

① 사안 처리 절차(요약)

학교폭력 사안 접수 \rightarrow 전담기구 사안 조사 \rightarrow 전담기구 심의 \rightarrow **학교 자체 해결** 또는 $(\mathbf{z} + \mathbf{z} + \mathbf{z})$ (교육지원청)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부 \rightarrow 조치 이의 시 행정심판 청구

② **학교 자체해결제 도입**(19. 9. 1. 시행, 전담기구심의)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고, <u>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u>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 ③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관(기존 자치위원회 폐지 및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신설)

학부모 위원을 전담기구 구성원의 1/3이상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합니다. 이에 따라 본교는 교사 4명, 학부모위원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담기구는 담임교사와의 협조 하에 <u>사안 접수 및 보호자 통보</u>, <u>교육지원청 보고</u>, <u>학교폭력 사안조사</u>, **조사결과 보고**,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2022학년도 아동 학대 및 가정폭력예방교육 연수 자료

최근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가정폭력입니다. 가정폭력은 악순 환 되어 아동학대, 학교폭력, 강력범죄 등 또 다른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아이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가정폭력이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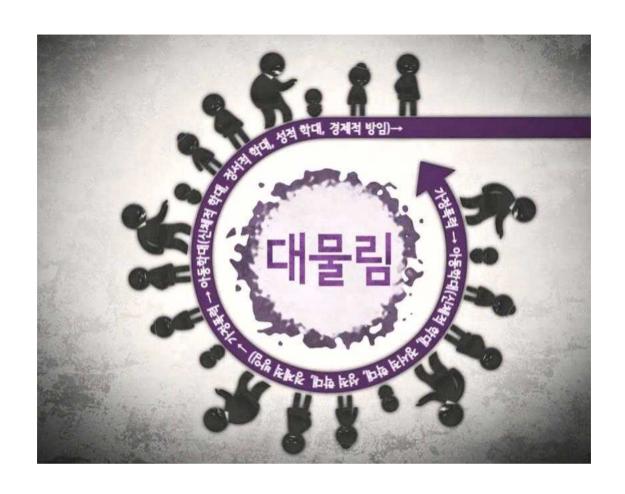
-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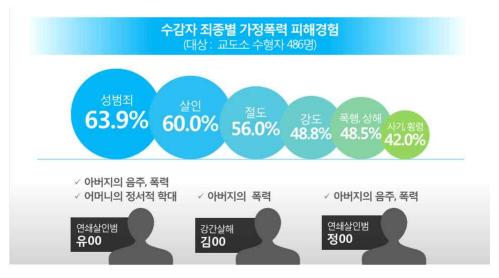


2. 가정폭력의 파급력

학대의 현장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존감, 자아상에 심각한 문제를 겪게 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또한 책임지는 것을 어려워하게 되고 극심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어 정상적으로 성장하고 발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방치하고, 올바른 성장으로 이끌지 않는다면,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또다시 타인에게 정서적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u>가정폭력은 한 가정 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폭력으로 확산되거나 다음 세대로</u> <u>대물림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것입니다.</u>





출처: 신동욱(2003). 아동, 청소년기 가정폭력 경험이 성인범죄에 미치는 영향. 경찰대 치안정책 연구소

3. 아동학대란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에게 계속적으로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 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합니다.

▶ **신체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이를 허용하는 행위



시체적 징호

- 설명하기 어려운 신체적 상흔
- 발생 및 회복에 시간차가 있는 상처, 골절 등
- 사용된 도구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는 상처
- 담배 불 자국 뜨거운 물에 잠겨 생긴 화상자국
- 겨드랑이, 팔뚝, 허벅지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행동적 진호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보임
- 공격 또는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 귀가에 대한 두려움

● 정서학대 : 성인이 아동에게 하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억제·기타 가학적인 행위



신체적 징호

- 성장장애
- 언어장애

행동적 징호

- 특정물건을 계속 빨고 있거나 물어뜯음
- 신체발달 저하 반사회적, 파괴적 행동장애
 - 히스테리, 강박, 공포 등 정신신경성 반응
- 원형탈모 등 극단행동, 과잉행동, 발달지연, 자살시도
- **성학대** : 성인이 성적 만족을 위해 아동의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나 아동과의 부적절함



신체적 징후

- 걷거나 앉는데 어려움
- 회음부의 통증과 가려움
- 찢기거나 손실된 처녀막
- 아동의 질에 있는 정액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또는 홍진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행동적 징후

-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 해박하고 조숙한 성 지식
- 타인, 동물,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 수면장애 (유뇨증, 유분증) 섭식장애(폭식증, 거식증)
- 위축, 환상, 퇴행행동,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입천장의 손상, 성병감염 및 임신, 인두임질 방화/동물에게 잔혹함, 비행, 가출, 자기파괴적 행동
- 방임 : 아동의 양육과 보호를 소홀이 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



신체적 징후

- 성장지연, 발달지체
- 기아, 영양실조, 적절하지 못한 영양섭취 비행 또는 도둑질
- 냄새 나는 의복, 청결하지 못한 외모 학교에 일찍 등교하고
- 지속적인 피로, 나른함, 조는 행위 집에 늦게 귀가

행동적 징후

- 음식을 구걸

3. 가정 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

● 연령별 아동 특성 이해

자녀가 가진 능력이나 발달 이상으로 부모의 기대 수준에 맞게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데 이처럼 높은 기대는 아동학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에 다양한 아동 발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올바른 자녀 양육 방법 습득

아동을 소유물로 생각하지 않고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여 체벌과 훈육을 혼동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부모의 스트레스 관리

부모의 언행은 항상 자녀의 모델이 됩니다. 언행은 신중히 생각하신 후에 해주세요. 부모들은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동에게 그 불만을 터뜨리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하게 정서적 욕구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봅니다.

- 자녀의 잘못된 행동에는 심한 처벌이나 질책보다는 사랑과 관심으로 지도합니다.
- 필요시 학교 선생님과 정보를 교환합니다.

4.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발생시 대처법

가정폭력 피해신고 112에 꼭 연락하세요.



여성긴급전화 1366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1366은 1년 365일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 나 □ 독독 《 가정목력 피해아동 상당실 안에흔의 목록 등으러주세요 만디가 도의

카카오톡 친구찿기에서 "banditalk"으로 채팅 상담을 할 수 ************** 있습니다.

5. 가정폭력 인권 감수성 체크리스트

순	내 용	응답
1	자신의 아이나 배우자는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가끔 때릴 수도 있다고 생각	예 □ 아니오 □
2	누군가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맞아도 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3	가정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라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4	가정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말이 안통하면 폭력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5	다른 가정의 폭력을 목격해도 그것은 그 가정의 일이므로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6	자신이 가족 구성원에게 폭력을 당하더라도 가정의 행복을 위해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7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했어도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 아니오 □
8	가정폭력이 일어나는 것은 폭력을 행한 사람의 기분이 안 좋았거나 술 때문일 수 있으니 문제 삼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 위의 8개 문항 중 '예'라고 응답한 문항이 하나라도 있나요? 정답은 <u>모두</u> '아니오'입니다.

위의 상황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에서도 가정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아동학대예방사업

함께합니다







아동학대 의심상황



- 사고로 보기에는 미심쩍은 멍이나 상처가 있을 때
- 보호자가 아동의 상처를 숨기거나 설명이 부적절한 경우



- 아동을 대상으로한 모든 성적행동
- 아동의 나이에 맞지 않는 성적행동이나 조숙한 성지식



- 아동이 성인에게 언어적, 정서적 위협을 당하는 경우
- 언어폭력이나 심한 비교, 가족내 따돌림, 집 밖으로 쫓아내는 행위



방임

-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아동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노출시키는 경우

① 신고접수

- 24시간 신고접수



② 현장조사

- 상담원 및 경찰 동행 출동
- 피해아동 및 학대행위 의심자 등 조사 및 증거수진
- 아동학대 사례판단



되해아동 보호조치

- 보호시설 및 의료시설 인도 치료위탁, 가정위탁 등



4 학대행위자 임시조치

- 제지 및 격리, 접근금지친권 등 권한 행사 제한
- 상담 및 교육 위탁



⑤ 피해아동 사례관리

- 상담 및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 한습 지워
- 수사 및 증거지원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학대행위자 사례관리

- 보호처분임시조치 등의 결과 상담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심리치료
 의료지원(통원 및 입원)
- 가정지원 등



7 피해아동가정 사례관리

- 상담 및 가족치료
 가정지원(경제 및 가사지원)
- 가족기능강화 프로그램



③ 사후관리

- 통합사례관리회의재학대 방지 모니터링
- 사후관리 기관 연계



* 업무처리 절차는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외면하지 마세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아이지킴콜 112



보건복지부

* 신고자의 신분은 아동학대처벌법 제 62조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 30조에 의해 보호됩니다.

법무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 경 찰 청









2022학년도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연수 자료

◆ 디지털 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불법 촬영물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현행법으로도 처벌되고 있는 <mark>명백한 성범죄 행위</mark>

◆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불법 촬영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

유포 현박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비동의 유포, 재유포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사진 한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유통, 공유

웹하드, 음란물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성적 괴롭힘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 디지털 성범죄의 올바른 이해

01. 성관계 영상 촬영에 동의했으면 유포되는 것도 자기 책임 아닌가요? No!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되었다면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촬영에 대한 동의는 결코 유포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지 않으며 촬영 당시에 동의하였더라도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02. 몰래 찍힌 사진, 몰래 유포한 영상 등을 다운로드하거나 보기만 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 않나요?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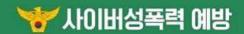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의거 아동·청소년 대상의 영상은 다운로드 및 소지, 보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니더라도 피해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보는 것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확산하는 2차 가해 행위입니다.

03. 과거에 유포한 가해자를 신고하고 영상(사진)을 삭제했는데, 영상(사진)이 또 유포되었어요. 재유포된 경 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mark>No.</mark>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 공간을 매개로 하기 때문에 삭제한 영상이 재유포되는 등 피해가 재발생, 재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서는 재유포 피해 또한 지원하고 있으며,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삭제 비용 또한 무료이며 이 외에 수사나 법률, 의료, 심리 치유 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상담신청 www.women1366.kr/sto pds 전화 02-735-899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 원에서 운영)에 삭제요청(무료) 상담과 피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지원, 수사와 □ 법률 등의 지원, 의료· 심리치유 지원, 쉼터로의 연결 등도 지원



이렇게 행동해요



낯선 사람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 할 때 ™ 만남 거절하고 대화 중단하기

랜덤채팅앱에서 대가성 만남을 요구할 때 ◎ 응하지 않고 캡쳐해서 신고하기



불법촬영 합성영상 유포 화장실 등에 의심스러운 물건이 보일 때 ☞ 즉시 112 신고하기

불법촬영이 의심될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112 신고하기

몸 사진을 보낸 후 유포하겠다고 협박받았을 때

☞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신고하기

지인이 합성된 사진·영상을 봤을 때 당사자에게 알리고 신고 도와주기



성적 문자

친구가 올린 성적인 영상을 보고 불쾌할 때 불쾌함 표현하기 / 대화 중단·신고하기

성적인 욕설, 몸 사진·영상을 받았을 때 ☞ 대화 중단·신고하기

SNS에서 성적인 영상을 봤을 때 '신고 / 스팸' 누르기 / 다른 곳에 게시하지 않기

몸 사진전송을 요구받았을 때

☞ 절대 응하지 않기 / 대화 중단하기



도움을 요청해요

언제든지 도와드려요!



사건을 수사해주세요

경찰 (112·117 / 앱: 112긴급신고·스마트국민제보 / 학교전담경찰관)

영상 유포를 막아주세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377)

상담을 받고 싶어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388, www.cyber1388.kr) 여성긴급전화1366 (1366)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hotline@cyber-lion.com)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십대여성인권센터 (010-3232-1318, 카톡·틱톡 cybersatto)

- ☑ 피해를 입은 것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 ▼ 혼자 고민하지 말고 도움을 받으세요.
- ☑ 주변에 고민하는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세요.

2022학년도 흡연예방교육 연수 자료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



- 1)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금연하는 것이다(특히, 임산부, 수유하는 여성).
- 2)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절대로 집안에서는 피우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피운다.
- 3) 차 안에서 어린이가 같이 타고 있을 때에는 절대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 4)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들어왔을 때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씻고 양치질을 한 다음 어린이 곁에 갈 것.
- 5) 담배를 빼 문 채 젖병, 장난감 등 어린이가 가까이 하는 물건을 만지지 말 것.
- 6) 아기를 안거나 손을 잡고 걸으면서 절대 담배를 피우지 말 것.

가접 흡연과 3차 흡연



<u>간접흡연이란</u>,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 연기와 담배가 타면서 발생하는 연기를 옆에 있거나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간접흡연을 '강요된 흡연' 혹은 '강제적 흡연'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흡연을 할 때 발생하는 독성물질 중 가스형태의 화학물질은 벽, 가구, 옷, 장난감, 집먼지 등의 표면에 달라붙을 수 있습니다. 흡연이 끝난 이후에도 실내 환경에서 장기간 흡연에 의한 오염 물질이 배출될 수 있는데 이를 **3차 간접흡연**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사람이라도 흡연 하는 경우 나머지 가족 역시 흡연의 피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속 중 한사람이라도 흡연 하는 경우 나버지 ★ 흡연의 피해 1차 흡연 흡연자 본인의 피해 ■ 백내장,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췌장염 ■ 폐암. 유방암, 신장암, 심장병 ■ 우울증, 만성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 초래 2차 흡연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 손상 ■ 성대 손상, 유방암 등 3차 흡연 옷, 벽면에 붙은 연기로 인한 피해 ■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 - 발암 물질 생성 ■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 집중 ■ 니코틴 중독, 태아 폐 발달 저해, 천식 등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청소년 흡연을 예방하는 데는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는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흡연율이 높습니다.

부모가 담배를 피우면 사랑하는 자녀의 건강을 해치는 결과가 되므로 의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 ◆ 부모가 흡연을 하는 경우라면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국가에서는 국민의 금연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1) 금연상담전화: 1544-9030
 - 2) 무주보건지소 금연클리닉(063-320-8228)
 - 3) 기타 금연치료 의료기관(http://hi.nhis.or.kr에서 검색 가능)
- ◆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자녀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입습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 ◆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할 때는 금연 음식점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 ♥ 자녀들에게는 그 어떤 금연운동보다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2022학년도 감염병 예방 연수 자료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코로나19 포함)

학생에게 발생하는 주요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등교중지 및 출석인정이 됩니다.

- ※ 등교중지 대상자: 법정감염병 환자, 법정감염병 의사환자, 법정감염병 병원체 보유자 이외의 환자로서 의사가 감염성이 강한 질환에 감염되었다고 진단한 사람
- 가. 감염병이 의심되면 등교하기 전에 담임 선생님께 연락한 후 병원(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 선 별진료소(☎ 063.320.8360)에 연락 후 안내에 따릅니다.)에 갑니다.
- 나. 병원 진료 후 감염병 진단이 나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하시고 격리 치료를 합니다.
- 다. 치료, 완치 후 병원에서 확인받은 의사의 진료 확인서, 진단서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시면 감 염병으로 결석한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 ※ 유의사항: 등교중지 기간보다 미리 등교 시에는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가진단 앱 1번 문항에 입력, 가정에서 쉬면서 경과 관찰.

🧼 증상 계속되거나 의심시 병의원 또는 가정에서

RAT(신속항원검사)

RAT 음성이라도 증상이 계속되면 가정에서 안정 원칙.

학급

* 고위험 기저질환

-시험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교를 원할 병의원 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음성 제출 후 등교 가능 (제출일 다음날 24시까지 인정) RAT양성 PCR 양성

> 보건소로 PCR 검사 보낸

PCR 1회-음성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2회 권고

-당뇨, 중중 천식, 만성 신장 질환, 만성 호흡기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 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 (3.14.부터 한달간 한시적용) -> 진료, 상담, 처방 실시

검체채취일 기준 7일간 격리.

확진자 발생시 학급 전원(접촉자분류) 검사 권유

7일간 3회 RAT검사 권고.

(1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 시 24시간 이내 검사 (2차 검사) 1차 검사 후 2~3일 뒤 검사

(3차 검사) 접촉자로 분류시부터 6~7일 뒤 검사 가정, 병의원 검사 모두 인정

---권장 사항이라 가정에서 탄력적으로 적용 가능함. 학생의 건강상태를 세심하게 관찰하여 조기에 이상 증세를 파악하여 가까운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것도 좋습니다.

확진 후 격리해제자가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신속항원검사에 서 양성(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선제 검사나 접촉자 검사 불필요. 동거 가족 수동감시 10일

- 1) 3일이내 PCR(PCR 검사를 우선 권 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권고.
- 2) 6-7일차 RAT 권고.

3일 이내 pcr 결과 확인시까지 자가진단 앱 3번 문항 체크 후 등교중지. 음성이며 무증상이면 등교 가능.

이후 매일 건강상태를 세심히 관찰하여 유사 증상 발생시 즉시 등교중지.

동거 가족 확진일 경우 추가 가족간 감염 사례가 빈번하므로 학급내 전파를 막기위해 학부모님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코로나19 종식 선언 일까지 보건당국의 한시적 조치로, 입원치료통지서, 출입국증명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보호자 확인서 등 진료나 처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담임선생님께 제출하여 증빙

2022학년도 정보통신 윤리교육 연수 자료

무주초등학교

◎ AI 실험을 통한 미디어 영상의 영향력

SBS 일요특선다큐 영상으로, 두 AI가 8주간 학습을 한 후 같은 질문에 보이는 반응을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아동에게 연령대에 맞는 양질의 콘텐츠를 보여주는 것의 중요함 을 보여줍니다.

- 영상 제목: AI 실험 대공개! 미디어 영상이 우리 아이에게 미치는 놀라운 영향! (7분 15초) https://youtu.be/2gkhjW1X8ag

- 영상 장면(일부)



- 영상 출처: SBS STORY 유튜브

◎ 연령제한 콘텐츠 및 유해영상 차단 방법

가정에서 영상 제공 플랫폼 이용시 아래 방법을 활용하면 연령제한 콘텐츠와 유해영상 등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 유*브 제한 모드 설정하기 앱 오른쪽 상단에 '계정 아이콘' 클릭 → '설정' 항목 클릭 → '일반'항목 클릭 → '제한 모드' 버튼 활성화 ※ 미성년자에게 부적절한 동영상을 숨길 수 있음. 단, 필터링이 완벽하진 않음.
- 넷**스 자녀 보호 기능 사용하기 특정 관람등급이 설정된 프로필을 생성하여 기능 사용 ※ 관람등급 선택/특정 프로그램 차단이 가능함. 자동 재생 활성/비활성 설정 가능함.

6. 학부모회 운영



2022학년도 학부모회 운영 계획

□ 학부모회 운영 개요

- 학부모회 구성
 - 무주초등학교 학부모회 회원 총 150세대 참여
 - 구성 절차 : 코로나19 방역지침으로 인한 학부모 정기총회 미실시 온라인 선거를 통한 학부모회 임원 및 대의원회 구성
- 학부모회 조직
 - 집행부 :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 (총 4명)
 - 대의원 : 각 학급 대표 및 총무 2명 (총 21명)
- 학부모회 운영 방향
 - 무주초 학부모 밴드 개설을 통한 학교·학부모 간 소통의 공간 마련
 - 학부모 동아리 활동(책노리, 해노리, 손노리, 꽃노리, 맛노리)을 통한 학교 참여 활성화
 - 무주초 교육 가족 간 소통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 상시 운영
 - 학부모 재능 나눔 및 봉사 활동 상시 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연계성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과 학부모회 대의원 간의 활발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의견 수렴· 반영 등 학교 운영에 학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연계성 마련
 - 학부모 총회의 의견이 학교교육과정에 수립·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학교운영위원 회 및 교무회의에 협조 체계 구축
- 놀이를 통해 소통, 배려, 사회성을 키우며 자라는 우리학교
 - 학생·학부모가 함께 어울려 놀이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서로 소통 하며 성장할 수 있는 시간 마련
 - 학부모 재능나눔을 기반으로 한 책노리(독서교육), 해노리(전래놀이교육), 꽃노리(원 예교육), 손노리(재봉틀교육), 맛노리(요리교실) 등 다양한 학부모 참여 동아리 활동을 마련

□ 학부모회 학교 참여 활동 계획

○ 목 적

- 학부모 동아리를 활성화하여 친목을 다지며 학부모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다양한 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은 물론 학부모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다.
- 교육가족이 함께 하는 시간을 마련하여 정보를 나누고 자녀 양육에 대한 소통을 활성화하며 무엇보다 놀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과의 추억을 만들 수 있다.

○ 주요 활동 내용

순	행 사 명	운영 시기	비고
1	학부모 급식실 모니터링	영양교사 자체 계획	
2	학교교육 모니터링	상시 간담회 운영 수업공개 운영 계획	학교·학급 교육과정 운영 방과후 학교 운영
3	신입생 학부모 만남의 날	미정	신입생 학부모·학부모회·학교 간 소통의 장
4	학생회·학부모회 연합 행사	상시	학생회 리더십캠프 결과 공유
5	세계문화축제 운영 도우미	9월 7일 (목) 예정	
6	학교축제 학부모 부스 운영	10월 19일 (수) 예정	
7	크리스마스 행사	12월 23일 (금) 예정	
8	학부모 교육	미정	연 2회 운영 예정



무주초등학교 학부모회칙

제정 2019.12.31. 개정 2021.03.17.

제1조(목적) 학부모회는 무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 하여 학교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학부모회의 명칭은 '무주초등학교 학부모회'라 한다.

제3조(기능) 학부모회는 학교 교육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 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 교육 모니터링
- 2.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 교육 활동 참여·지원
- 3.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 4. 그 밖에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업

제4조(회원) 회원의 자격은 본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학부모회에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총무 1명, 감사 1명의 임원을 둔다.

- ② 임원은 총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하며, 균형적인 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다.
- ③ 임원 외에 학부모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학부모회의 회원 중에서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학년도 정기총회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② 학부모회의 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③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부회장 중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궐위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회장까지 궐위되었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학부모회를 대표하고 학부모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감사는 학부모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④ 부회장이나 감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의원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총무는 학부모회의 재정 및 회계 사항을 계획·관리한다. <신설 2021.03.17.>

제8조(학부모회의 조직) ①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총회와 대의원회를 둔다.

② 학부모회 산하에 필요한 경우 학년별 학부모회, 학급별 학부모회, 아버지회, 어머니회 등 기능별 학부모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총회) ① 총회는 전체 학부모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3월에 소집한다.
- ③ 임시총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총 회원수 중 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④ 회장은 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총회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총회 개최 7일 전까지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총회는 회원의 10분의 1이상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회장은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총회의 의결사항 등)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
- 2. 학부모회 규정의 제 · 개정 사항
- 3. 학부모회 임원 선출
- 4. 학교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9조제2항에 따라 총회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 원을 선출한다.
- ③ 학부모회 의결사항 중「초、중등교육법」제32조 및「전라북도 도립학교 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에 해당하는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에 권고한다.

제11조(대의원회) ① 학부모회에는 총회의 의결사항 중 실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둔다.

- ② 대의원회는 임원, 학년별 학부모회 대표, 학급별 학부모회 대표, 기능별 학부모회 대표를 포함하여 구성한다.
 - ③ 대의원회 회장은 학부모회 회장이 겸임한다.
- ④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회장이나 재적 대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다.
 - ⑤ 대의원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⑥ 회장은 대의원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회의소집 의제 및 일시,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⑦ 대의원회 회의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의원회의 의결사항)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총회의 의결사항 외의 학부모회 운영에 관한 사항
- 2. 총회의 의결로 대의원회에 위임한 사항

제13조(학년별·학급별 학부모회) ① 학년별 학부모회는 해당 학년의 학부모로 구성하고, 학년 학부모 대표는 해당 학년별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② 학년별 학부모회에서는 해당 학년 학생들의 학교생활, 학급운영 등에 대한 건의 및 지원 사항 등 대해서 논의한다.
- ③ 학년별 학부모회는 학년 학부모회 대표나 해당 학년 학부모회 회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④ 학급별 학부모회와 기능별 학부모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학년별 학부모회 규정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14조(기능별 학부모회) ① 기능별 학부모회는 해당 모임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로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② 기능별 학부모회의 대표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제15조(회계 등 회무처리) ① 회장은 학부모회 회원 중에서 이 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간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학부모회의 회계사무는 당해 학교 설립자에 적용되는 예산회계관계법규, 지방재정법규 또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학부모회장에게 있다.

- ③ 학부모회의 일체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④ 회장은 결산내역을 2월말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정지원 등) ① 학부모회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으로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부모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학부모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7조(회계연도) 학부모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8조(해산) ① 학부모회는 학교 통·폐합 등의 사유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통 · 폐합 일자로 해산한다.

- ② 학부모회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부터 2주 이내에 회원에게 해산 사항을 알려야한다.
- ③ 학부모회가 해산된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학부모회의 남은 예산은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에 귀속된다.

제19조(청산) 학부모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학부모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부모총회의 소집) 최초의 학부모총회는 학교의 장이 소집한다.

부 칙 (2019. 12. 31.)

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7.)

이 규정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무주초등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규정

제정 2017. 03. 15. 1차 개정 2019. 03. 20.

- **제1조(목적)** 학부모안전도우미회는 무주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명칭) 이 회는 '무주초등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이하 "안전도우미회"라 한다)라 한다.
- **제3조(기능)** 안전도우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학교 등교 시간 학생 안전보행 지도 및 계도 활동
 -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
 - 3. 학생 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 활동
 - 4.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한 활동
 - 5. 그 밖에 안전도우미회에서 의결한 활동
- 제4조(회원) 회원 자격은 무주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전라북도 학교 학부모안전도우미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2호)로 한다.
- **제5조(임원)** ① 안전도우미회에는 회장 1인, 부회장 1인, 총무 1인, 감사 1인의 임원을 둔다.
 - ② 임원은 안전도우미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 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없을 경우 2회 이상 중임할 수 있으며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
 - ④ 회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부회장이 궐위 된 회장의 남은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한다.

⑤ 부회장이나 감사가 궐위 되었을 때에는 안전도우미회에서 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안전도우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 겸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회계사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감사는 안전도우미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회원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① 안전도우미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매년 1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 ③ 회의 소집 시 5일 전에 그 회의 목적 및 일시, 장소 등을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 ④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 결과를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결사항 등) ① 안전도우미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 1. 안전도우미회 활동 계획 수립
- 2. 안전도우미회 규정의 개정 사항
- 3. 안전도우미회 임원 선출
- 4. 학생 안전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 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
- 5. 그 밖에 회장이 안전도우미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9조(안전도우미회 조직) 안전도우미회는 산하에 '학부모교통안전도우미회'를 두며, 안전도우미회회원은 자동적으로 학부모교통안전도우미회 회원이 된다.

- 제10조(회계사무) ① 회계사무는 예산회계 관계법규 및 공립학교 회계 규칙을 준용하며, 그 집행의 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 ② 안전도우미회의 수입금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결산 내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제11조(재정) ① 안전도우미회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정은 다음 각호에 의해 충당할 수 있다.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 2. 학교회계 지원금
 - 3. 기타 수입
 - ② 안전도우미회원에게는 일체의 회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12조(회계연도) 안전도우미회의 회계연도는 학년도와 같다. 다만, 특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학부모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다르게 할 수 있다.
- 제13조(해산) ① 안전도우미회의 목적사업의 완료 등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학부모총회의 결의로 해산한다.
 - ② 안전도우미를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회원 등에 해산 결의 사항을 통보한다.
 - ③ 안전도우미회가 해산된 경우 안전도우미회의 남은 예산은 무주초등학교 회계에 귀속된다.
- 제14조(청산) 안전도우미회를 해산할 때에는 임원이 청산 사무를 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9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